■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10. 2.>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소방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